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 (1)

## 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일정

구분	일자	신청방법
청약일정	2024.04.30(화) 09:00 ~ 17:30	청약홈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

## ■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

구분	내용
신청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</li> <li>•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) 이하인 분</li> <li>-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 소유 부동산(토지 및 건물)의 합계액이 3.31억 이하인 경우 순위 없는 추첨제(30%) 자격으로 신청가능</li> <li>※ 혼인신고일 이전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 배제함(2024.03.25 개정)</li> </ul> </li> <li>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 충족</li> </ul>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정 순서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소득구분 → ② 순위 → ③ 지역 → ④ 미성년 자녀수 → ⑤ 추첨</li> </ol> </li> <li>• 공급 기준 ※신생아 우선(일반)공급 신설(2024.03.25.개정)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신생아 우선공급 1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00%(맞벌이 120%) 이하인 경우</li> </ul> </li> <li>② 신생아 일반공급 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40%(맞벌이 160%) 이하인 경우</li> </ul> </li> <li>③ 우선공급 3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00%(맞벌이 120%) 이하인 경우</li> </ul> </li> <li>④ 일반공급 1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40%(맞벌이 160%) 이하인 경우</li> </ul> </li> <li>⑤ 추첨공급 3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40%(맞벌이 160%)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,100만원 이하인 경우</li> </ul> </li> </ol> </li> <li>• 동일 요건에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 유무에 의한 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자녀가 있는 1순위자에게 우선공급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1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(임신중이거나 입양을 포함)</li> <li>② 2순위 : 혼인기간 중 자녀가 없거나 2018. 12. 11.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</li> </ol> </li> <li>•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</li> <li>②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(태아 포함)</li> <li>③ 미성년 자녀수(태아를 포함)가 같은 경우 추첨</li> </ol> </li> </ul>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 (2)

##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

소득구분		비율	소득금액					
	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신생아 우선공급, 우선공급	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이하	~7,004,509원	~8,248,467원	~8,775,071원	~9,563,282원	~10,351,493원	~11,139,704원
	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초과 120% 이하	~8,405,411원	~9,898,160원	~10,530,085원	~11,475,938원	~12,421,792원	~13,367,645원
신생아 일반공급, 일반공급	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초과 140% 이하	7,004,510원~ 9,806,313원	8,248,468원~ 11,547,854원	8,775,072원~ 12,285,099원	9,563,283원~ 13,388,595원	10,351,494원~ 14,492,090원	11,139,705원~ 15,595,586원
	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초과 160% 이하	8,405,412원~ 11,207,214원	9,898,161원~ 13,197,547원	10,530,086원~ 14,040,114원	11,475,939원~ 15,301,251원	12,421,793원~ 16,562,389원	13,367,646원~ 17,823,526원
추첨공급	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	140%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충족	9,806,314원~	11,547,855원~	12,285,100원~	13,388,596원~	14,492,091원~	15,595,587원~
	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60%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충족	11,207,215원~	13,197,548원~	14,040,115원~	15,301,252원~	16,562,390원~	17,823,527원~

### ※ 소득확인기준

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	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
전년도 소득	전전년도 소득

- 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788,211) \* (N-8), 100% 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- ※ (가구원수 산정 기준)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.
- ※ (월평균 소득산정 대상)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(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영제자매 부양) 포함). 단, 세대의원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
- ※ (월평균소득)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.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(수입금액)을 근로기간(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)으로 나누어 산정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(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)으로 나누어 산정.
- ※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(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, 신규취업자, 이직자, 신규사업자, 프리랜서 등)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“주택청약 FAQ (국토교통부 발간)”을 확인하여야 하며,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자산보유기준

구분	자산보유기준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									
부동산 (건물+토지)	3억3,100만원 이하	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
	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									
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							
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											
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											
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</li> <li>①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</li> <li>② 「초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</li> <li>③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</li> <li>④ 중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</li> <li>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(개별공시지가 기준)</li> </ul>													

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,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